

2021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CONTENTS

■ 전형 안내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3
2. 전형일정	4
3. 지원 및 선발방법	4
4. 지원자격	5
5. 전형방법	8
6. 한의학과 전형방법	9
7. 한의학과 선발방법	10
8. 제출서류	11
9. 전형료	13
10. 지원자 유의사항	13
11. 등록포기 및 환불안내	13
12.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14
13. 장학제도	15

■ 양식 및 별첨

【양식1】 편입학원서	16
【양식2】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재직증명서	17
【양식3】 농어촌학생 전형 신입학 확인서	18
【양식4】 농어촌학생 전형 고등학교장 확인서	19
【양식5】 등록포기각서	20
【별첨1】 학사학위과정(4년제) 간호과 지정 전문대학 현황	21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입학 정원	정원 내		정원 외						
계열	학부(과)		일반 전형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학사 편입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학생	특성화 고졸 재직자	기초수급 차상위	
의학	한의학과	108			4						
자연	간호학과	85	5		2	8					
	물리치료학과	40	3			4	1			1	
	임상병리학과	60	3			6	1				
	의료산업 융합학부	의료공학전공	30								
		IT의료데이터 과학전공	30		10						
		스마트IT전공	30		13			1			
	제약공학과	50									
	바이오산업융합학부 (화장품약리학전공)(식품생명공학전공) (화장품소재공학전공)	110									
	화장품공학부 (화장품공학전공)(산업품질공학전공) (산업디자인공학전공)	120	5							1	
	화장품·제약자유허전공	30									
	한방식품조리 영양학부	식품조리학전공	30		6			1			
		식품영양학전공	30		7						
	힐링산업학부	향산업전공	29								
		향약개발학전공	30		13			1			
	소방방재 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30		4				2		
		방재안전관리전공	30	2							
	보건학부 (보건관리전공)(산업안전보건전공)	70									
	미술치료학과	40	3								
건축디자인 학부	실내디자인전공	30						2			
	건축학전공	30		10							
인문	의료경영학과	40									
	청소년교육상담학과	40		8						2	
	아동복지학과	40		14							
	상담심리학과	40		10							
	노인복지학전공	30		6							
	글로벌 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30								
		호텔관광학전공	30								
	통상경제학부 (세무금융전공)(글로벌비즈니스전공)	55		8							
	경찰행정학과	40	1	10			4				
평생교육융합학과	1							1			
사범 (인문)	중등특수교육과	20			-						
예능	뷰티케어산업학과	40	3								
체능	한방스포츠의학과	35		5						1	
	실버스포츠학전공	35		10						1	
합 계		1,518	25	134	30	18	9	4	1	6	

입학
정원의
4% 이내

입학
정원의
4% 이내

학사 편입	중등특수교육과, 평생교육융합학과를 제외한 대학전체 30명 이내로 모집함 해당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 범위에서 선발함 (간호학과는 입학정원의 30% 이내 범위에서 학과에서 정한 모집인원에 따라 선발함)
----------	---

- ※ 학부로 모집한 경우 전공은 입학 후 본인 희망에 따라 배정함
- ※ 모든 전형의 편입생은 3학년 선발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동일계열 학과로 지원 시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선발가능함 (단,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특별전형은 4학년으로 선발함)
- ※ 간호학과 학사편입의 경우 2023학년도 편입학 모집까지 한시적으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의 인원으로 모집
- ※ 평생학습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모집단위의 등록인원이 8명 이상일 경우 야간 및 주말 강좌 개설을 허용할 예정임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 접수	인터넷접수	2020. 12. 14(월) ~ 12. 18(금) (09:00 - 17:00)	http://www.jinhakapply.com http://www.uwayapply.com 본 대학 입학팀
	방문접수		
서류 제출 기간	전 모집단위 (한의학과 제외)	2021. 1. 6(수) 17:00까지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가능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학팀에 도착하는 서류까지 인정) *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한의학과	2021. 1. 13(수) 17:00까지	
면접고사 (한의학과 제외)		2021. 1. 16(토) 09:30	각 학과별 별도 공지
합격자 발표	최 초	2021. 1. 21(목) 이전	http://www.dhu.ac.kr
	추 가	2021. 1. 29(금) ~ 1. 31(일)	
등 록	최 초	2021. 1. 25(월) ~ 1. 28(목)	금액 추후 통보
	추가최종	2021. 2. 1(월) 까지	

※ 모집단위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모집 할 예정임

3 지원 및 선발방법

가. 지원방법

- 1)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에 관계없이 2회까지 복수지원이 가능(1지망 기준)
(단, 제 1지망과 제 2지망은 전형유형이 동일하여야 함)

나. 선발방법 (한의학과 별도)

- 1) 모집단위별로 제 1지망 지원자 중에서 총점 성적순으로 100% 선발하고, 모집단위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 2지망 지원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함
- 2) 모집단위별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적대학 성적 100%로 선발
- 3) 면접점수 20점 미만인 자 및 면접고사 불참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4)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함
- 5) 동점자 선발 우선순위
 - 가) 전적대학 성적 환산 반영점수 고득점자
 - 나) 면접점수 고득점자

4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정 원 내	일반 전형	①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4년제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등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개학기(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예정)하고 해당 대학 학칙에 따른 2학년 수료학점을 이수한 자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 <u>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u> 」에 의거하여 (전문)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하며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학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전문)학사학위증명서를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대학 4년제 간호과[별첨 1 참고]에서 2학년 또는 4개학기 (계절학기 제외)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만학도 : 만 27세(1994.02.28. 이전 출생자) 이상 ② 재직자 : 아래의 지정한 범위의 산업체에서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2020.12.14.) 6개월 이상의 경력자로 현재 재직 중이며 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 산업체의 범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적용받는 근로자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4대 보험 가입대상 사업체가 아닌 농업, 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를 통해 취업이 확인되는 경우 인정함 ◇ 창업·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세금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재직기간의 산정 ①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기준일: 2020년 12월 14일] ② 군 의무복무 경력(병력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③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④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⑤ 원서접수 시작일(2020년 12월 14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div>
정 원 외	학사 편입	■ 일반학과(한의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① 학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u>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u> 」에 의거하여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경우에 한하며 학력인정(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학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학사학위증명서를 입학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한의학과 - 아래 기준 모두에 부합하는 자에 한함 ① 의료법상 의료인으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 입학부터 졸업까지 4년제인 국내·외 정규대학 학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 또는 수업연한이 4년인 전문대학 학사학위 소지(취득예정)자에 한함 ※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산업대, 학점은행제, 독학사, 학력인정과정 등은 지원불가 ③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TOEIC, TOEFL, New TEPS) 중 하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 ※ TOEIC 700점 이상, TOEFL 80점 이상, New TEPS 300점 이상 ④ 2021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를 응시하여 각 영역별 백분위 60점 이상인 자 ⑤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한 국가 공인한자검정시험 1~3급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소지자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의료인력(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양성관련 모집단위와 동일한 3년제 관련학과의 전문학사학위 소지(예정)자

■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①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 신입학을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입학한 자
- ②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농어촌학생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구분	지원 자격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6년 이수자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6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사망, 이혼 및 본 대학교 총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제외) 모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수자	초·중·고교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서 재학기간 중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농어촌
학생

- ※ **농어촌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이며, 학교 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소재지 구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 **친권과 양육권이 경합할 경우에는 양육권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함**
-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함**
- ※ **자격요건 기타 사항**
 - ① 재학 당시 성년자인 학생이나 미성년자인 학생 중 혼인한 자의 경우에는 성년이 되기 직전 또는 혼인하기 직전의 부모를 기준으로 함
 - ② 미성년자인 학생의 부모적용 기준
 - 부모 중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는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법률상의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할 때는 자녀교육권의 효력이 우선인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입양한 양자일 경우에도 법률상의 입양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양부모만을 기준으로 하되, 친권과 양육권이 서로 경합할 때에는 자녀교육권이 우선인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이 장기여행, 중병, 심신상실, 수감 등으로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와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친권행사금지가처분, 친권상실선고 등으로 법률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③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의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 소재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학교이며,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 소재 학교이어야 함(동일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
 - ④ 부모,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소재지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하며, 거주기간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소재 학교 재학기간을 말함

특성화고
학생

- ①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 모집단위와 동일계열 출신으로 인정된 자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나목에 적용받는 자**
 - ※ **일반고(종합고)에서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출신자 포함**
(단,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이상 이수한 경우 기준학과가 다르더라도 인정가능)
 - ※ **마이스터고등학교 출신자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고교 출신자는 지원불가**

■ 특성화고교 동일계열 출신자 학과표

모집단위	특성화고교 교육과정의 동일계열 기준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소방방재환경전공	[공업계열] 기계과, 전자기계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금속재료과, 전기과, 전자과, 통신과, 컴퓨터응용과, 토목과, 건축과, 디자인과, 화학공업과, 환경공업과, 식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88 192 539 465"></td> <td data-bbox="539 192 1506 465"> <p>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등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등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연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등</p> </td> </tr> <tr> <td data-bbox="288 465 539 663">소방방재환경전공</td> <td data-bbox="539 465 1506 663"> <p>[산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등 [가사계열]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등</p> </td> </tr> </table>		<p>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등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등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연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등</p>	소방방재환경전공	<p>[산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등 [가사계열]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등</p>														
	<p>품공업과, 섬유과, 인쇄과, 컴퓨터게임과, 만화애니메이션과, 영상제작과 등 [농생명계열] 식물자원과, 동물자원과, 산림자원과, 조경과, 농업토목과, 농업기계과, 식품가공과, 농산물유통정보과, 환경·관광농업과, 생물공학기술과 등 [수산해운계열]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자연수산과, 수산식품과, 해양환경과, 냉동공조과, 동력기계과, 항해과, 전자통신과, 해양레저산업과, 항만물류과, 해양정보과 등</p>																		
소방방재환경전공	<p>[산업정보계열] 경영정보과, 회계정보과, 무역정보과, 유통정보과, 금융정보과, 정보처리과, 콘텐츠개발과, 전자상거래과, 상업디자인과, 관광경영과 등 [가사계열] 조리과, 의상과, 실내디자인과, 보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서비스과, 미용과 등</p>																		
<p>특성화고졸 재직자</p>	<p>①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다목에 적용받는 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재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포함 ※ 일반고(종합고)에서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 출신자 포함</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 data-bbox="288 913 1506 949"> <p>※ 산업체의 범위</p> </td> </tr> <tr> <td data-bbox="288 949 1506 981">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td> <td data-bbox="288 981 1506 1012">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td> </tr> <tr> <td data-bbox="288 1012 1506 1043">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td> <td data-bbox="288 1043 1506 1075">- 단, 창업·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td> </tr> <tr> <td data-bbox="288 1075 1506 1106">- 단,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td> <td data-bbox="288 1106 1506 1137">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88 1137 1506 1169">(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영농사실확인원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td> </tr> <tr> <td colspan="2" data-bbox="288 1169 1506 1200"> <p>※ 재직기간의 산정</p> </td> </tr> <tr> <td data-bbox="288 1200 1506 1232">①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기준일: 2020년 12월 14일]</td> <td data-bbox="288 1232 1506 1263">② 군 의무복무 경력(병력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td> </tr> <tr> <td data-bbox="288 1263 1506 1294">③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td> <td data-bbox="288 1294 1506 1326">④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td> </tr> <tr> <td data-bbox="288 1326 1506 1357">⑤ 원서접수 시작일(2020년 12월 14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td> <td></td> </tr> </table>	<p>※ 산업체의 범위</p>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창업·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단,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영농사실확인원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p>※ 재직기간의 산정</p>		①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기준일: 2020년 12월 14일]	② 군 의무복무 경력(병력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③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④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⑤ 원서접수 시작일(2020년 12월 14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p>※ 산업체의 범위</p>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직원의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거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 사업체																		
③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창업·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지, 세금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단, 4대 보험 가입 대상 사업체가 아닌 1차 산업(농업·수산업 등) 종사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 확인을 통해 인정함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영농사실확인원 등) 확인을 통해 인정할 수 있음																			
<p>※ 재직기간의 산정</p>																			
① 총 재직기간(4대 보험 중 하나 이상에 가입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자[기준일: 2020년 12월 14일]	② 군 의무복무 경력(병력 특례기간의 산업체 경력 포함)은 재직기간에 포함됨																		
③ 영세 창업, 자영업자 중 휴업기간 등 비영업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서 제외함	④ 재직기간은 제출한 서류상으로 증명되는 기간만을 산정함(휴직, 정직 기간은 제외)																		
⑤ 원서접수 시작일(2020년 12월 14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																			
<p>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p>	<p>① 일반전형 지원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의 표와 같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전형 신입학 자격을 갖춘 자</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88 1518 523 1550">구분</th> <th data-bbox="523 1518 1506 1550">지원 자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8 1550 523 1590">기초생활수급자</td> <td data-bbox="523 1550 1506 1590">「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의한 수급자</td> </tr> <tr> <td data-bbox="288 1590 523 1800">차상위계층</td> <td data-bbox="523 1590 1506 1800">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p> </td> </tr> </tbody> </table>	구분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p>												
구분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제2호에 의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p>「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p>																		

공 통 사 항

- ◎ 전적대학의 출신학과 또는 계열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함(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특별전형 제외)
- ◎ 아래에 해당되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음
 - 본 대학교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
(단,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0. 12. 18(금) 이전 제적자는 지원 가능)
 - 3년제 대학에서 2년을 수료한 자

5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한의학과 별도)

구분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100%)
			전적대학 성적	면접고사	
정원내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60	40	100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전 모집단위	60	40	100
정원외	학사편입	전 모집단위	60	40	100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60	40	100
	농어촌학생	전 모집단위	60	40	100
	특성화고교 학생	전 모집단위	60	40	100
	특성화고졸재직자	평생교육융합학과	60	40	100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 모집단위	60	40	100

※ 모집단위별 지원자 수가 모집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전적대학 성적 100%로 선발 (단, 간호학과는 예외)

나. 전적대학 성적 반영방법 (한의학과 별도)

$$\text{전적대학 성적} = \{ 30 + 30 \times (\text{총 취득학점의 평점평균} / \text{총 취득학점의 평점만점}) \}$$

1) 전문대 졸업(예정)자는 전 학년 성적을 반영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수료한 학년(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단, 환산점수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함)

※ 전적대학(교)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자 중 2020학년도 2학기(계절학기 포함) 성적이 제출서류 마감일(2021년 1월 6일) 까지 성적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0학년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함

2) 2개 이상의 대학에 재적하였을 경우, 최종대학 성적을 반영함

3) 평점평균이 미기재된 대학(외국대학 포함)의 경우, 교내 학칙의 성적등급표를 준용하여 성적을 산출함

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름

다. 면접고사 평가방법 (한의학과 별도)

1)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실시

◎ 면접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명 등)를 삭제 또는 음영 처리하여 면접평가를 진행함

◎ 면접장에서 학생의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대학명, 가족관계, 출신지역 등)를 일체 언급하지 않으며, 언급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면접 시 면접위원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일체 질문하지 않음)

2) 면접평가요소 : ①학업능력 ②인성 및 가치관 ③사고력 및 표현력 ④면접태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학업능력	10~9	8~7	6~5	4 이하
인성 및 가치관	10~9	8~7	6~5	4 이하
사고력 및 표현력	10~9	8~7	6~5	4 이하
면접태도	10~9	8~7	6~5	4 이하

3)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반영함

4) 면접점수 20점 미만인 자 및 면접고사 불참자는 모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자격증소지자 또는 TOEIC성적 가산점 부여 (TOEIC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경우 인정)

모집단위	적용 자격증 및 TOEIC성적	가산점
보건학부	위생사, 병원행정사, 의료보험사, 보건교육사, 병원코디네이터,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소방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및 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위험물산업기사	전적대학 성적의 3%
청소년교육상담학과	청소년지도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유치원정교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보육교사 2급 이상, 레크레이션 2급 지도자, 캠프지도자, 평생교육사	전적대학 성적의 3%
간호학과, 중등특수교육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TOEIC 성적 750점 이상	전형총점의 3%
	TOEIC 성적 700점 ~ 749점	전형총점의 2%
	TOEIC 성적 650점 ~ 699점	전형총점의 1%

※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또는 어학성적 외에는 가산점 미적용

6 한의학과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총점 (100%)
			M·DEET	공인한자급수	공인영어성적	
정원외	학사편입	한의학과	60	20	20	100

나.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반영방법

1) M·DEET 각 영역별 백분위점수 반영비율(%)

자연과학 I	자연과학 II
60	40

2) 점수 환산공식

$$M\cdot DEET \text{ 성적} = \{(자연과학 I \text{ 백분위점수} \times 0.6) + (자연과학 II \text{ 백분위점수} \times 0.4)\} \times 0.6$$

다. 공인한자급수 반영방법

한자급수	환산 반영점수
1급	20
2급	18
3급	15

※ 공인한자급수 인정기관

- (사)한국어문회, (사)한자교육진흥회, 한국교육문화회¹⁾, (사)한국평생교육평가원,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²⁾, 대한상공회의소, (사)한국정보관리협회,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대한검정회)³⁾, ㈜YBM商務漢檢

※ 준1급 = 2급, 준2급 = 3급으로 인정

※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에서 공인 또는 민간자격 확인가능

1) 한국교육문화회 : 2019. 12. 31까지 취득한 자격증까지 공인한자자격증으로 인정

2) (사)한국한자한문능력개발원 : 59회차(2019.10.26)까지 취득한 자격증까지 공인한자자격증으로 인정

3) (사)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 준2급까지 공인한자급수로 인정

라.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

TOEIC	New TEPS	TOEFL	환산점수
980~990	537~600	117~120	20.00
975	529~536	116	19.84
970	516~528	115	19.68
965	515		19.52
960	508~514	114	19.36
955	501~507	113	19.20
950	496~500	112	19.00
945	484~495	111	18.84
940	480~483		18.68
935	473~479	110	18.52
930	465~472	109	18.36
925	457~464	108	18.20
920	454~456		18.00
915	447~453	107	17.84
910	439~446	106	17.68
905	436~438		17.52
900	431~435	105	17.36
895	425~430	104	17.20
890	421~424		17.00
885	416~420	103	16.84
880	415		16.68
875	406~414	102	16.52
870	403~405	101	16.36
865	400~402		16.20
860	394~399	100	16.00
855	390~393	99	15.84
850	385~389		15.68
845	380~384	98	15.52
840	377~379	97	15.36

TOEIC	New TEPS	TOEFL	환산점수
835	372~376	96	15.20
830	370~371		15.00
825	366~369	95	14.84
820	362~365	94	14.68
815	359~361		14.52
810	355~358	93	14.36
805	351~354	92	14.20
800	348~350	91	14.00
795	346~347		13.80
790	342~345	90	13.60
785	341		13.40
780	339~340	89	13.20
775	334~338	88	13.00
770	333		12.80
765	331~332	87	12.60
760	328~330	86	12.40
755	327		12.20
750	324~326	85	12.00
745	322~323		11.80
740	318~321	84	11.60
735	316~317	83	11.40
730	315		11.20
725	311~314	82	11.00
720	309~310		10.80
715	307~308	81	10.60
710	305~306		10.40
705	302~304	80	10.20
700	300~301		10.00

7 한의학과 선발방법

가. 전형요소별 반영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위에 의하여 선발함

나. 전형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순위에 의하여 선발함

- 1) M·DEET 환산 반영점수 고득점자
- 2) 공인한자급수 환산 반영점수 고득점자
- 3) 공인영어성적 환산 반영점수 고득점자

8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비 고
일반전형	① 편입학원서 1부 (사진부착 3cm X 4cm, 인터넷접수자는 사진 업로드) ②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1부 - 산업대학 및 각종학교 출신자에 한하여 전문대학 졸업학력 인정증명서 1부 - 학점은행제에 의한 전문학사 취득자는 전문학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1부 ③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평점평균 기재) 1부 ④ 자격증명서 또는 TOEIC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해당자격 중 택1)	공통제출서류 : 일반전형의 제출서류 ① ~ ④ ⑤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1부 ⑥ 재직자인 경우 : 재직증명서 1부 및 아래 증명서 중 택1 - 4대 보험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고용지원센터 발행) ⑦ 영농종사자인 경우 : 농지원부 등본 또는 어업인 허가증명서 1부 ⑧ 자영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1부 및 납세증명서 1부	
학사편입	① 편입학원서 1부(사진부착 3cm X 4cm, 인터넷접수자는 사진 업로드) ②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③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평점평균 기재) 1부 ④ 자격증명서 또는 TOEIC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한의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
	① 편입학원서 1부(사진부착 3cm X 4cm, 인터넷접수자는 사진 업로드) ②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③ 전적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평점평균 기재) 1부 ④ 공인영어성적(TOEIC, TOEFL, New TEPS) 증명서 1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취득) ⑤ 2021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M·DEET) 성적표 1부 ⑥ 공인한자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취득)	한의학과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일반전형의 제출서류 ① ~ ④	

<p>농어촌학생 (해당자격 중 택1)</p>	<p>1. 농어촌출신자 특별전형으로 전적대학 입학한 자 ⑤ 전적대학의 농어촌출신자 특별전형 신입학 확인서 1부[양식 3]</p> <p>2. 농어촌출신자 특별전형으로 전적대학에 입학하지 않았지만 농어촌학생전형 신입학 지원자격을 갖춘 자 (가, 나 중 택1)</p> <p>가. 중·고교 6년 (부모거주)</p> <p>① 농어촌학생전형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양식 4] ② 부·모·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③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시 증빙서류 제출 - 이혼 시 : 친권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학생의 기본증명서 1부 - 사망(실종) 시 : 친권자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사망한 부모 명의 기본증명서 1부 ※ 단, 기본증명서에 '사망' 기록되지 않는 경우 제적등본 1부)</p> </div> <p>나. 초·중·고교 12년 (본인기준)</p> <p>① 농어촌학생전형 고등학교장 확인서 1부[양식 4] ②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주소 변동 내역 포함) ③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p> <p>※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지원자격 심사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제출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p>	
<p>특성화 고교학생</p>	<p>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p>	<p>[공통제출서류]</p>
<p>특성화고졸 재직자</p>	<p>⑤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1부</p> <p>▪ 아래 가~다 중 택1</p> <p>가. 4대보험 중 1개이상 가입 사업체 재직자</p> <p>⑥ 재직증명서 1부 및 아래 증명서 중 택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1부 - 고용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p> <p>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체(농수산업 등) 종사자</p> <p>⑥ 공적증명서 1부 (농지원부, 영농사실확인서, 어업인확인서 등)</p> <p>다. 4대보험 미가입 영세 창업·자영업자</p> <p>⑥ 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⑦ 납세증명서 1부</p>	<p>일반전형의 ① ~ ④</p>
<p>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 나 중 택1)</p>	<p>가. 기초생활수급자</p> <p>⑤ 본인기준 수급자증명서 1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당자도 인정)</p> <p>나. 차상위계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⑤ 차상위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1부 (장애수당, 자활급여, 장애인연금, 차상위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우선돌봄 차상위가구)</p> <p>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기준)</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서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기준)</p> </div>	

※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졸업 및 성적증명서)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팩스본(053-819-1254)으로도 대체 가능

※ 외국대학 출신자 제출서류 : ① 전적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 (공증 및 번역본 포함)

②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공증 및 번역본 포함)

③ 학위(학력)입증서류 1부 (해당되는 서류 택1)

- 아포스티유 확인서/주재국 한국영사관 확인 서류/중국교육부 학위인증센터 인증서류

9 전형료 : 30,000원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은 면제)

※ 접수된 원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수험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형료를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함 (천재지변, 사고 등으로 면접응시가 불가능할 경우는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 일부 환불 가능)

10 지원자 유의사항

- 가.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등 일부 학과의 경우, 교과과정표에 개설된 졸업에 필요한 전공과목(2학년 과정에 개설된 과목 포함)을 반드시 이수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며 (동일학과 출신자 제외), 전공과목 이수 특성상 편입 후 졸업까지 2년 이상 소요 될 수 있음
- 나. 한의학과 학사편입의 경우 입학 시, 본과 1학년에 편입하되 **저학년 선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선수과목 이수에 필요한 기간만큼 재학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지원자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입학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후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라. 입학원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 지원자는 **반드시 원서에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면접고사 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 바. 지정된 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사. 예비합격자(후보)는 추가합격자 발표에 대비하여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불합격될 경우 본 대학은 책임지지 않음
- 아. 편입학 후 입학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조되었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 취소를 함 (해당업무 담당자의 과실로 인한 입시부정의 경우라도 입학취소 될 수 있음)
- 자. 합격자 중 **2021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로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2021년 2월 26일까지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를 입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학기 졸업 또는 수료가 불가능한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학력조회 결과 미졸업(미수료)자는 재학 중이라도 입학 취소를 함
- 차.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편입학 후 본교 학점 인정기준에 따름
- 카.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는 면접고사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접고사 당일 유증상자는 분리하여 별도 시행**함
- 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함
-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학팀(053-819-1703, 1702)으로 문의

11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 가. 등록포기 : 본 대학에 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포기각서를 본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등록포기각서는 본 요강의 서식을 참조
- 나. 환불안내
 - 1) 기 간 : 2021. 1. 29(금) ~ 2. 2(화) 17:00
 - 2) 구비서류 및 지참물
 - 가) 등록포기각서 1부
 - 나)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다)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
- 다. 유의사항 : 본교 학칙 제9장 제46조 4호에 의거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 등록금 반환비율이 차등 적용됨

12 인터넷 원서접수 안내

가. 인터넷 원서접수 기간 : 2020. 12. 14(월) 9:00 ~ 12. 18(금) 17:00 까지

나. 인터넷 원서접수 절차

↓ 홈페이지 접속	진학어플라이(http://www.jinhakapply.com) 또는 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에 접속
↓ 회원가입	1. 회원가입은 반드시 접수자 본인이 가입을 하여야 함 2. 회원으로 가입한 자에 한하여 입학원서 접수가 가능함 3. 회원가입 약관을 꼼꼼히 확인 후 회원 가입
↓ 공지사항 및 유의사항 확인	지원자격, 전형일정, 전형료(W30,000)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수수료는 대학에서 부담하므로 무료
↓ 원서작성	1. 인터넷 접수 시 안내를 확인하여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여야 함 2. 전자결제 전 원서는 수정 및 학과 변경이 가능하나 전자결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을 하여야 함 3. 원서작성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사이트 내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053-819-1703~2 으로 문의 바람 ※ 모든 전형의 편입생은 3학년 선발을 우선으로 할 예정이며,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은 동일계열 학과로 지원 시 3학년 또는 4학년으로 선발가능함 (단, 의료인력 관련학과 출신자 특별전형은 4학년으로 선발함)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예정)자는 희망학년(3학년 또는 4학년)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함
↓ 전자결제	1. 전형료를 결제 함(계좌이체, 무통장입금, 신용카드결제, 휴대폰결제) 2. 전형료 결제와 동시에 입학원서 접수 완료 3. 전형료 결제 후에는 원서 내용의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며 전형료가 반환되지 않으므로, 결제 전에 반드시 재확인
↓ 입학원서 및 수험표 출력	1. 전형료 결제 후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2. 수험표(접수증)를 출력하여 본인 수험번호를 확인. 지원자는 수험표(접수증)를 출력하여 면접 당일 신분증과 같이 지참 3. 수험표(접수증)은 원서접수 후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함
첨부서류 제출	1. 필요한 첨부서류를 본 대학으로 등기우편, 직접 방문 등으로 제출 2. 첨부서류 제출 마감일 가. 한의학과 제외한 전 모집단위 : 2021. 1. 6(수) 17:00 나. 한의학과 : 2021. 1. 13(수) 17:00 3. 서류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다. 첨부서류 제출 주소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대구한의대학교 입학팀 전형담당자 앞

13 장학제도

장학금명	선발기준 및 내용	장학금액	지급기간
진학장려	편입학자 중 전적대학 성적이 2.5이상(4.5만점기준)인 자	등록금50%	1개학기
	편입학자 중 전적대학 성적이 2.5미만(4.5만점기준)인 자	등록금30%	
협력대학 출신자	당해연도 편입학자 중 연계교육 협력 협약대학 출신 내(외)국인 학생 (단, 2013.11월 이후 협력 협약대학으로, 협약서 내 편입학장학금 혜택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적용)	등록금70%	1개학기
동문우대	당해연도 편입학자 중 본교 졸업(예정)생으로 학사편입한 자 (단, 지원당시 원서 및 제출서류가 본교 졸업생으로 확인될 경우 적용)	등록금50%	4개학기
평생학습자 특별전형	당해연도 편입학자 중 평생학습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단, 직전학기 평점평균 2.5이상 유지시 계속지급)	등록금50%	4개학기
※ 편입생 장학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 1종류만 지급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2021학년도 대구한의대학교 편입학 원서

사진(Photo)
(3cm × 4cm)

수험번호 *

1. 전형 유형 ※ 전형명 직접 기재

2. 지원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휴대폰	
추가 연락처	이메일	@
주소	(-)	

3. 모집단위 ※ 희망지원 학년에 ○ 표기

1 지망	학과(부) · 전공 (3학년 / 4학년)
2 지망	학과(부) · 전공 (3학년 / 4학년)

4. 학력사항

전문대학	년	월	일	대학	과 졸업(졸업예정)
대학교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졸업(예정) · 수료(예정)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졸업(예정) · 수료(예정)

5. 학점 / 성적

총 취득학점	총	학 점	취득평균평점 / 취득평점만점	/
--------	---	-----	-----------------	---

6. 환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본인은 귀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본 대학은 제3자 제공기관, 취업위탁, 입학업무(선발, 장학, 통계 등)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E-mail,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수집하며, 수집한 개인정보는 입학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 입학 원서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개인정보, 민감정보, 취업위탁, 제3자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12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료
납부
확인란

[양식 2]

	2021학년도 편입학 평생학습자 특별전형(정원내) 재직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용 도	대학편입학	
근 무 사 항			
산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부서	직위 및 직급		
재직기간	~ (년 개월 근무)		
직장주소			
전화번호	규모(종업원수)	명	
위와 같이 재직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대표자 (직인)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			
발급자	소 속		성 명 (인)
	전화번호		



2021학년도 편입학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 신입학 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과		입학일자	
전형유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용 도	대학편입학

위 학생은 본 대학(교)에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정원외)으로 신입학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대학(교) 입학(교무)처장 (직인)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

발급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인)

[양식 4]

농어촌학생전형 고등학교장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남·여
-----	--	---------	--------	-----

가. 본인 및 부모 모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6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재 학 사 실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나. 본인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지역 소재 초·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12년)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재 학 사 실	학 교 명	소 재 지	재 학 기 간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고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중 학 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초등학교	도(시) 군 읍(면)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위 학생을 귀 대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학생전형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_____ 고등학교장 직인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

전형명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모집단위		성명		수험번호	
-----	---------------	------	--	----	--	------	--

등 록 포 기 각 서

수험번호 :

모집단위 :

학과(부) · 전공

성명 :

상기 본인은 대구한의대학교 2021학년도 편입학 모집에 합격(추가합격) 한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등록포기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민·형사상의 소송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등록포기 사유

① 타 4년제 대학교 진학

② 대학진학 포기

③ 기타사유()

■ 등록금 환불계좌(등록을 한 경우 등록금 환불받을 계좌를 기재 바랍니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20 년 월 일

본 인 : (서명)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귀하

※ FAX로 제출가능하며, FAX번호는 053-819-1254입니다.

학사학위(4년제) 과정 간호과 지정('12~'19학년도) 전문대학 현황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연번	지정학년도	학교명
1	'12학년도	군산간호대학교	43	'14학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	'12학년도	경북대학교	44	'14학년도	영진전문대학교
3	'12학년도	원광보건대학교	45	'14학년도	충북보건과학대학교
4	'12학년도	강릉영동대학교	46	'15학년도	경인여자대학교
5	'12학년도	선린대학교	47	'15학년도	계명문화대학교
6	'12학년도	조선간호대학교	48	'15학년도	김해대학교
7	'12학년도	경북과학대학교	49	'15학년도	대동대학교
8	'12학년도	전남과학대학교	50	'15학년도	대원대학교
9	'12학년도	기독교간호대학교	51	'15학년도	동남보건대학교
10	'12학년도	마산대학교	52	'15학년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	'12학년도	광주보건대학교	53	'15학년도	삼육보건대학교
12	'12학년도	혜전대학교	54	'15학년도	수원여자대학교
13	'12학년도	거제대학교	55	'15학년도	전북과학대학교
14	'12학년도	서영대학교	56	'15학년도	제주관광대학교
15	'12학년도	여주대학교	57	'15학년도	진주보건대학교
16	'12학년도	가톨릭상지대학교	58	'16학년도	경민대학교
17	'12학년도	호산대학교	59	'16학년도	구미대학교
18	'12학년도	경북보건대학교	60	'16학년도	동주대학교
19	'12학년도	대경대학교	61	'16학년도	목포과학대학교
20	'12학년도	대구과학대학교	62	'16학년도	백석문화대학교
21	'12학년도	대구보건대학교	63	'16학년도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2	'12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64	'16학년도	부산여자대학교
23	'12학년도	문경대학교	65	'16학년도	부천대학교
24	'12학년도	수원과학대학교	66	'16학년도	서정대학교
25	'12학년도	신성대학교	67	'16학년도	순천제일대학교
26	'12학년도	안동과학대학교	68	'16학년도	용인송담대학교
27	'12학년도	안산대학교	69	'16학년도	인천재능대학교
28	'12학년도	영남이공대학교	70	'16학년도	전주비전대학교
29	'12학년도	제주한라대학교	71	'17학년도	강동대학교
30	'12학년도	청암대학교	72	'17학년도	경남도립거창대학
31	'12학년도	충청대학교	73	'17학년도	서일대학교
32	'12학년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74	'17학년도	창원문성대학교
33	'13학년도	동강대학교	75	'17학년도	포항대학교
34	'13학년도	동의과학대학교	76	'18학년도	군장대학교
35	'13학년도	두원공과대학교	77	'18학년도	서라벌대학교
36	'13학년도	수성대학교	78	'18학년도	송곡대학교
37	'13학년도	울산과학대학교	79	'18학년도	송호대학교
38	'13학년도	춘해보건대학교	80	'18학년도	영남외국어대학
39	'13학년도	한림성심대학교	81	'18학년도	한영대학
40	'14학년도	경남정보대학교	82	'19학년도	강원관광대학교
41	'14학년도	경북전문대학교	83	'19학년도	세경대학교
42	'14학년도	동아보건대학교	84	'19학년도	우송정보대학

전체 총 84개교